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2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최윤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구미정, 김경훈,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병운,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음.
-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안 제45조제1항)
- 나. 위원 해촉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현행 제46조제7항)
- 다.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안 제47조제2항)
- 라.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중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단서 신설></u>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 ----- ----- ----- ----- ----- ----- <u>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⑤ <u>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u>
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삭 제></u>
⑦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u>	<u><삭 제></u>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 ⑧ (생략)

제4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시장이 소집한다.

<삭 제>

<삭 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운영세칙) -----

-----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비상설화**(안전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를 검토**¹⁾하였으나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이러한 추세**²⁾가 지속될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그에따른 별다른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 비상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경우 구성되는 위원회로, 안전량에 의해 회의개최 횟수와 운영비가 달라지므로 예상 안전량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2) [안전량 추이 고려]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안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위원회 위원 수당 등)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비용추계 비대상으로 판단됨